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79
----------	-------

발의연월일 : 2026. 10. 13.

발 의 자 : 문진석 · 강준현 · 이주희
손명수 · 이정문 · 박정현
이재관 · 맹성규 · 이연희
조승래 · 김교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④ ----- ----- ----- <u>2028년 12월 31일</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u>6억원</u> 이하일 것	4. ----- ----- ----- <u>7억원</u>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